

홍콩 법인회사 설립을 위한 조례 및 규정 요약

홍콩에 설립하는 법인회사(홍콩법인)는 대부분의 경우 홍콩 회사등기소(CR, HK Company Registry, 公司註冊處)의 회사조례(HK Company Ordinance, Cap 622, 公司條例 第622章)에 정의된 비공개유한회사(Private Limited Company, 私人有限公司)의 설립을 의미하며

- 회사설립의 주체 : 홍콩거주 또는 비거주 하는, 자연인 또는 법인(Body corporate) 등 설립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음
- 설립멤버(주주)의 책임 : 홍콩회사조례에 의해 정의된 정관(Article & Association)에 따라 출자지분에 한정 됨.
- 홍콩 회사조례의 요구 조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홍콩 회사등기소(CR, HK Company Registry, 公司註冊處) 및 홍콩세무국(IRD, Hong Kong Inland Revenue Department, 稅務局)에 서류 접수 및 비용을 지불한 후, 법인등기증서(Certificate of Incorporation, 公司註冊證明書), 사업자등록증(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, 商業登記證)을 발급 받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 함.
- 홍콩법인은 업종에 무관하게 사전허가 없이 설립은 가능하나, 은행업종(Banking), 주식선물(Securities and future), 퇴직연금(Mandatory Provident Fund)등은 해당업종의 조례(Ordinance)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, 대금업(Money lender), 신탁회사(Trust Company) 등은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영업활동 가능함.

홍콩 법인(Body Corporate) 형태

- (a) 주권에 의한 공개 유한회사 (a public company limited by shares, 公眾股份有限公司)
- (b) 주권에 의한 비공개 유한회사 (a 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, 私人股份有限公司)
- (c) 주식자본금을 갖춘 공개 무한회사 (a public unlimited company with a share capital, 有股本的公眾無限公司)
- (d) 주식자본금을 갖춘 비공개 무한회사 (a private unlimited company with a share capital, 有股本的私人無限公司)
- (e) 주식자본금이 없이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 (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without a share capital, 無股本的擔保有限公司)

※ 홍콩의 법인은 표준정관을 사용하여 법인의 운영 형태에 따라 이사의 구성 및 의무, 주주의 책임 및 권한 등 회사의 운영 형태를 정관에 명해야 함.

※ 홍콩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의 형태는 <주권에 의한 비공개 유한회사> (a 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 私人股份有限公司) 설립절차는 <주권에 의한 비공개 유한회사>에 관한 절차를 설명한 것 임.

홍콩법인 설립절차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Step 1 | 회사명 선정 이사 선임 자본금 설정 및 주주구성 정관준비 |
| Step 2 | 회사간사 선임 회사등록 주소지 선정 |

| | |
|---------------|---|
| Step 3 | 회사 설립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 통지서 제출 |
| Step 4 | 회사설립서류 수령 : 회사등기증 법인등기부 정관 사업자등록증 주식 이사회 회의록 인감 |
| Step 5 | 홍콩법인 은행계좌 개설 홍콩법인 설립 후, 홍콩법인 유지관리 및 세무신고 의무 준수 |

홍콩법인 설립 Step 1

회사명(Company name) 선정

- 홍콩법인 이름은 영문회사명 또는 중문(번체)회사명을 각각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영문과 중문을 혼합하여 회사명을 만들 수 없음. (예, ABC甲乙 Limited (x))
- 홍콩법인의 이름은 반드시 "Limited" (영문 회사명) 또는 "有限公司"(중문 회사명)를 법인이름의 끝 부분에 사용해야 함. (예, ABC Company Limited, 甲乙電子有限公司)
-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회사와 동일한 회사 이름은 사용할 수 없으며, 기존법인과 유사한 회사 이름일 경우 회사등기소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.
- 회사이름 중 일부 단어 또는 그 단어의 의미가 회사조례에 제한된 내용을 포함할 경우(예, 정부관련기관 이름 등)는 사전승인 없이 등록할 수 없음.

이사(Director,董事) 선임

- 18세 이상의 자연인 최소 1명을(국적 제한 없음) 이사로 선임해야 하며 법인(Body Corporate)은 이사로 임명될 수 없다
- 법인이사는 합리적인 관리, 기량, 성실함으로 기능을 수행 할 의무를 가지며, 등기부에 서명을 하여 임명에 동의하며, 이사는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해임의 사유가 되고 일반적인 법적 책임을 수반 함.

자본금(Shares capital, 股 份 설정 및 주주(Members 公司成員,) 구성

- 회사조례에 따라 주권(Shares)은 주주의 동산으로 정의되며, 법인의 정관에 따라 양도가 가능함.
- 주권은 액면가격이 없이 일련번호로 구분되며,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주권은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.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주권은 별도의 일련번호로 구분되며, 자본금 납입이 된 주권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없다. 모든 주권증서(Share certificate)는 주주의 소유권을 표시함.
- 회사는 주권(Shares)을 주식(Stock)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, 전액납입주권(Share Warrantee)을 발행할 권리가 없다(회사는 주주에게 자본금 납입의 의무를 강제할 권리가 없다)

정관(Article of Association,章程細則) 작성

- 홍콩법인회사는 회사에 대한 규정을 정의한 정관을 갖추어야 하며 정관에는 회사명, 주주의 채무관계, 자본금, 주식지분을 등을 포함해야 함.
- 홍콩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정관을 이용하여 회사의 운영방침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정관을 확정 후 회사등기소에 제출해야 함.

홍콩법인 설립 Step 2

법인비서(Company Secretary, 公司秘書) 선임

- 홍콩법인은 홍콩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홍콩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법인비서(또는 법인간사로 일반적으로 지칭함)로 지정해야 함.
- 법인회사의 이사와 법인비서는 겸임할 수 없음.
- 법인비서는 법인의 등기이사를 보좌하여 회사조례에서 요구하는 제반 행정업무를 지원 또는 대리하여 진행 할 수 있음.

회사등록 주소지 선정

- 홍콩법인은 정부로부터 연락이나 공지사항을 수신할 수 있도록, 홍콩지역 내에 사무실 주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함.

홍콩법인 설립 Step 3

회사 설립신청서(Form NNC1, 法團成立表格) 및 사업자등록 통지서(IRBR1, 商業登記署 通知書) 제출:

- 회사설립신청서 필수 기록사항: 회사의 형태, 회사명, 이사선임, 창립멤버(주주) 및 자본금 구성, 회사간사, 회사주소지 등을 기록 및 이사 임명동의서 서명
- 서류 접수 및 비용 납부 : NNC1, IRBR1, 정관, 등록비 및 세금
- 접수방법: 전자등록을 하거나, 또는 관련 서류를 기업등록국 창구에 접수하며, 회사등기 및 사업자 등록은 회사등기소에 접수를 하면 일괄(One-stop) 처리 됨.

홍콩법인 설립 Step 4

홍콩법인 설립 후 보관 서류

- 법인등기증서(Certificate of Incorporation, 公司註冊證明書) – 회사등기소(CR) 발행
회사등기부 [Incorporation Form (Company Limited by Shares) 法團成立表格 (股份有限公司)]
- 사업자등록증(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, 商業登記證) – 세무국(IRD) 발행
- 정관(Article of Association, 章程細則) – 표준정관 활용 법인의 이사(Director)가 준비
- 주권(Share certificate)
- 이사회 결의서, 이사임명 동의서, 주주명부 등 – 이사 또는 법인비서
- 회사인장(Company Seal, 公司印章) : 법인인감(Common Seal, 法團印章) 및 법인관인(Official Seal, 正式印章)

홍콩법인 설립 Step 5

홍콩법인 은행계좌 개설

- 홍콩법인 계좌 개설은 외국계 은행(HSBC, Hang Seng Bank) 및 한국계 은행(KEB, IBK) 등에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를 개설 할 수 있음
- 홍콩금융관리국(MKMA)의 지침에 따라 자금세탁, 불법자금거래 등의 목적으로 홍콩은행 계좌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,
홍콩의 모든 은행은 계좌개설 시, 홍콩법인의 사업실체, 법인이사의 본인 확인 및 서명 등을 위하여,
홍콩법인의 이사가 반드시 홍콩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.

홍콩법인 유지관리

- 이사의 공정행위(Fair Dealing by Director) 조례에 따른 법인관리
- 법인의 행정 및 절차(Company Administration and Procedure) 조례에 따른 법인관리
서면결의 절차 및 이행, 임시/정기주주총회 및 연차정기총회, 각종회의록 및 기록 유지보관, 주주 및 이사변동사항

- 연차보고 : 법인회사의 변동사항 유무를 매년 회사등기소에 신고의무

사업자등록 갱신 및 세무신고 - 세무국

- 사업자 등록증 매년 갱신 의무
- 고용주 신고 및 개인소득신고
- 법인소득신고